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사·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공소청법」과 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됨에 따라,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 마련을 위한 개정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규격의 제작 양식란 제1호 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3.의 제작 양식란 제3호 본문 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